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82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김준형・김재원・황운하

신장식 • 박은정 • 강경숙

정혜경 • 이해민 • 차규근

박지원 · 홍기원 · 이재강

서왕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 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 략)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②
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u>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의 의견제시) ① (생 략)	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u>산업</u>	<u>산</u>
<u>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u>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및 외교통일위원회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③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	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
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생략)

-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1. ~ 4. (생 략)
 - ②·③ (생 략)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
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